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1(병합, 분리)]

【전문】

【피고인】피고인1외2인

【검 사】이원석, 한웅재, 손영배, 김민형(각 기소, 공판), 김창진, 고형곤, 전준철, 차상우, 안병수, 유경필, 최임열, 김종우, 용성진, 손찬오, 최청호, 강상묵, 이만흠, 박건욱, 장대규, 이승훈, 어인성, 김주석, 조성윤, 이주용, 김태겸, 강일민, 정윤식, 유지연(각 공판),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양재식, 장성욱, 이상민, 파견검사 조상원, 박주성, 김영철, 강백신, 김해경, 문지석, 호승진(각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동북아 외 10인

【주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억 9.427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보테가 핸드백 1점(2017고합185 사건의 증 제1호), 루이뷔통 핸드백 1점(같은 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9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공소외 59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억 원을 추징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유]

1

[이유]

1

[이유]

]

【이유】

1

[이유]

]

[이유]

1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유]

]

[이유]

1

[이유]

]

【이유】

1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1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유】

]

[이유]

]

【이유】

1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유】

]

[이유]

1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1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